대학혁신지원사업자체평가규정 5-1-42

규정번호	5-1-42
제정일자	2019.2.25
최근개정	2022.2.21
개정차수	1차 개정
관리부서	혁신지원사업운영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하며, 혁신지원 사업의 차년도 사업계획 등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21.)

제2조(용어의 정의) “자체평가”라 함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성・합리성・공정성・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제4조(평가영역) 평가영역은 수행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영역
2. 집행(조직 및 운영) 영역
3. 사업결과 영역
4. 성과지표 영역
5. 기타 총장이 필요로 하는 영역

제5조(항목별 평가)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 항목별 평가등급은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시기) 평가는 계획・집행・결과 등 사업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평가 시기는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평가기구

제7조(전담부서) ① 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한 평가 전담부서는 사업단으로 한다.(개정 2022.02.21.)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 업무총괄
2.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관리에 관한 업무
3. 자체평가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
4. 평가결과의 공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반영

5. 자체평가 역량 향상
6.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평가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2.21.)

② 위원회는 교내·외 전문가 및 학생대표(재학생)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외 전문가는 사업영역별로 위촉한다.(개정 2022.02.21.)

③ 위원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평가
2. 사업비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평가
3.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
4. 개별사업 결과분석 및 종합평가
5. 그 밖의 사업평가에 관련된 주요 사항

제9조(간사)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10조(평가계획 수립) 사업단은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1.)

제11조(평가자료 제출) 사업운영 부서는 평가자료 요청 시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1.)

제12조(평가실시) ① 사업단에서는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한다.(개정 2022.02.21.)

② 위원회는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실사) 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사업운영 부서에 실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보고)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운영 부서 확인 후 대학혁신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2.21.)

제15조(평가결과 통보 및 공시) ①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1개월 안에 사업운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평가 전담부서는 혁신사업 평가 결과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기타) 본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